

대법원 2015두38092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8. 10. 12. 원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 한국방송연기자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1.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요지

- 원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방송연기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사용자로 하는 근로자들임을 전제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원고의 조합원들과 다른 근로자들과 사이에 교섭단위 분리를 청구하는 사안임

▣ 소송 경과

- 지방노동위원회(= 지노위)는 원고 조합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가 원고 조합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원고가 중노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제1심 : 원고 패(원고 조합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부정 = 중노위)
- 원심 : 원고 승(원고 조합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 지노위)

- 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함

2.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원고의 조합원인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원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하므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자격(당사자적격)이 없게 됨

▣ 판결의 결과

- 상고기각

▣ 판단의 근거

- 노동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 판결(학습지교사 사건)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6개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음 : ①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②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④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⑤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⑥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 원고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 긍정
 - 원고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들의 경우, 위 6개의 주요 요소 중 소득의존성 요소(①)나 전속성 요소(④)가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다른 요소에 관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방송연기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3. 판결의 의의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 판결(학습지교사 사건)은 취업 중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범위보다 넓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다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6개의 주요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이 판결은, 위 6개의 주요 요소 중 소득의존성 요소나 전속성 요소가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소에 관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에 의의가 있음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 판결과 이 판결을 계기로, 향후 종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